



(:)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1 ()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 5. 29.]

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9.>

-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29.>

-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 7.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4 (가)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

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호·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용도·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5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7.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목표달성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의 목표달성 여부
2. 목표달성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조치 및 개선방안
3.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

6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29.]

6 2() 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 7 ()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9., 2017. 1. 20., 2018. 1. 18., 2020. 12. 1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권자(「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를 말하며,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20.>
-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1. 2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0.>
- ⑥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 1. 2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홍보·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검토·이행 등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6.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점검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⑦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3. 5., 2015. 5. 29., 2017. 1. 20.>
-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기간과 검토 수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3. 5., 2017. 1. 20.>

7 2(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 8 (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②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호·가구 등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정보 공개·활용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20., 2020. 12. 11.>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에너지공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 5. 29.]

9 삭제 <2017. 1. 20.>

10 ()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1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2. 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19. 12. 3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

12 (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5. 29.]

[중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 5. 29.>]

13 ()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 5. 29.]

14 ()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 5. 29.]

15 (1)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16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1. 18.>

⑥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1. 18.>

[본조신설 2015. 5. 29.]

17 ()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7. 1.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법 제31조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18 ()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29.]

19 () 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20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7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2017. 1. 20.>

[본조신설 2015. 3. 5.]

[제12조에서 이동 <2015. 5. 29.>]

<제570호, 2013. 2. 22.>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본다.

3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제1호, 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126>까지 생략

<제187호, 2015.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06호, 2015. 5. 29.>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70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민간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민간시험 제1급 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시험 면제

2. 민간시험 제2급 1차 시험 합격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의 합격자 결정 및 응시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1호, 2015. 11. 18.>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9호, 2017. 1. 20.>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4호, 2017. 10. 20.>(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83호, 2018. 1.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6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⑤부터 ⑧까지 생략
- 7 생략

<제682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7호, 2020. 12. 11.>(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914호, 2020. 12. 11.>(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1. 20.>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출대상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2) 아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text{수수료} = \text{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times (1 + \text{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times 0.2)$$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 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text{수수료} = \text{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times (1 + \text{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 \times 0.1 + \text{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 \times 0.2)$$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2. 개별기준

가. 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 ²)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14,000

나. 비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 ²)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60,000 이상	2,537,00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10. 2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5.5.29.>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제 1 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제 2 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별표 3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면제
-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별표 3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중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20.>

에너지 절약계획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청 구분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사전확인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사전확인일련번호)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I. 건축주 및 설계자

건축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구 분 ^{주1)}	[] 민간 [] 공공기관
건축물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건축사	성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기계설비 설계사	성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전기설비 설계사	성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II. 건축 부문

건축 면적		제출대상 연면적	지상층: m ²	냉난방 면 적	지상층: m ²	
			지하층: m ²		지하층: m ²	
			합 계: m ²		합 계: m ²	
층 수	지상: 층(층고: m)	지하: 층(층고: m)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단열	부위별	열관류율	단열재			
			종류	열전도율	두께	
	외벽	$W/m^2 \cdot K$		$W/m \cdot K$	mm	
	지붕	$W/m^2 \cdot K$		$W/m \cdot K$	mm	
바닥	최하층	$W/m^2 \cdot K$		$W/m \cdot K$	mm	
	바닥 난방 층간 바닥	$W/m^2 \cdot K$		$W/m \cdot K$	mm	
구조	종류	열관류율	일사투과율 (차폐계수* 0.86)	창의 구성	창틀 종류	기밀 성능
	I	$W/m^2 \cdot K$				()등급 이상
	II	$W/m^2 \cdot K$				()등급 이상
	III	$W/m^2 \cdot K$				()등급 이상
	IV	$W/m^2 \cdot K$				()등급 이상
	외벽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을 포함합니다)	$W/m^2 \cdot K$		창 면적비 ²⁾		%
차양 장치	차양장치 설치비용 (남향 및 서향)	%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W/m^2

III. 기계설비 부문

난방기기	난방용				급탕용				
	종류	용량	효율	성적계수	종류	용량	효율		
		kW $kcal/h$	%			kW $kcal/h$	%		
냉방기기	종류		용량		성적계수[COP]				
					kW $usRT$				
펌프	급수용			급탕용			순환수용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배점	제어 방식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배점	제어 방식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배점	제어 방식
	$m^3/분$			$m^3/분$			$m^3/분$		
송풍기	종류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 효율			
						kW %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활용 폐열시스템 채택 []			개별난방 []		개별냉난방 []			

(4쪽 중 제3쪽)

IV. 전기설비부문

변전설비	수전 방식	수전 전압		수전 방식		위치	
		kV		회선		층	
	고효율 변압기	[]있음 []없음		2차측전력량계 시설		[]있음 []없음	
동력설비	콘덴서	전동기별 시설		집합시설		자동역률조정장치 [집합 시설인 경우]	
		[]		[]		[]있음 []없음	
	제어 방식	인버터 제어		채택	전동기부하명		
[]있음 []없음							
	그 밖의 제어 방식						
BEMS 또는 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있음 []없음						
조명설비	주 거실 설계조도			lx	거실 조명밀도	W/m ²	
	주조명광원	옥 내			W	옥 외	W
		조명기기	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장소
	형식		등급	[]있음			
조명 자동제어 시스템	[]있음 []없음		옥외등 격등조명 및 자동 점멸		[]있음 []없음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최대수요전력 관리	[]있음		[]없음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전체 콘센트 개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개수		설치비율		%
	공동주택	도어 폰	[]있음		[]없음		
		홈게이트 웨이	[]있음		[]없음		

V.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태양열 급탕/냉난방설비	냉 / 난 방 용			급 탕 용		
	종류	용량	집열효율	종류	용량	집열효율
		kW kcal/h	%		kW kcal/h	%
태양광 발전 설비	종 류	설치면적	발 전 용 량		발 전 효 율	
		m ²	kW		%	

(4쪽 중 제4쪽)

풍력발전 설비	종 류	설계최대풍속	발 전 용 량	날 개 지름	지상고	
		m/sec	kW	m	m	
지열이용 열펌 프설비	종류(형태)	냉난방 성능 [COP]	순환펌프 동력 합계	천공수/ 깊이	열교환기 파이프 지름	설계 유량(용량)
		난방[] 냉방[]	kW	()공/ ()m	mm	lpm/RT

작성방법

- 주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기관으로 구분합니다.
- 주2) 창 면적비 계산식 = 창 및 문 면적/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
- * 설비장비가 다수인 경우에는 용량이 가장 크거나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주요 장비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설비장비에 대한 용량가중 평균 효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평균 효율값을 기재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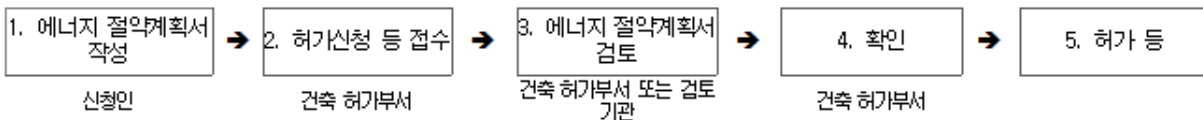
(휴대전화번호:)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1부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별표1]에 따름
------	--	------------------

처 리 절 차



* 건축주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 허가신청 등 접수 전에 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 어두운 란()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에너지소비량 코드번호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건축물 현황 구분				
	소유구분 [] 임대 (소유자:) [] 소유				주용도				사용승인				
	규모 (지상)		총 연면적		냉난방면적		냉난방 (냉방 방식)		(냉방 방식)				
	(지하)		총		m ²		m ²		m ²				
소재지													
보고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담당)				전자우편(담당)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기간은 분기를 단위로 최근 3개년(12분기) 실적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기간	연도												
	분기	/4	/4	/4	/4	/4	/4	/4	/4	/4	/4	/4	/4
에너지 소비량	도시가스												
	전기												
	지역 냉·난방												
	유류												
	기타												
	합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kWh/m ² ·년)				(kWh/m ² ·년)				(kWh/m ² ·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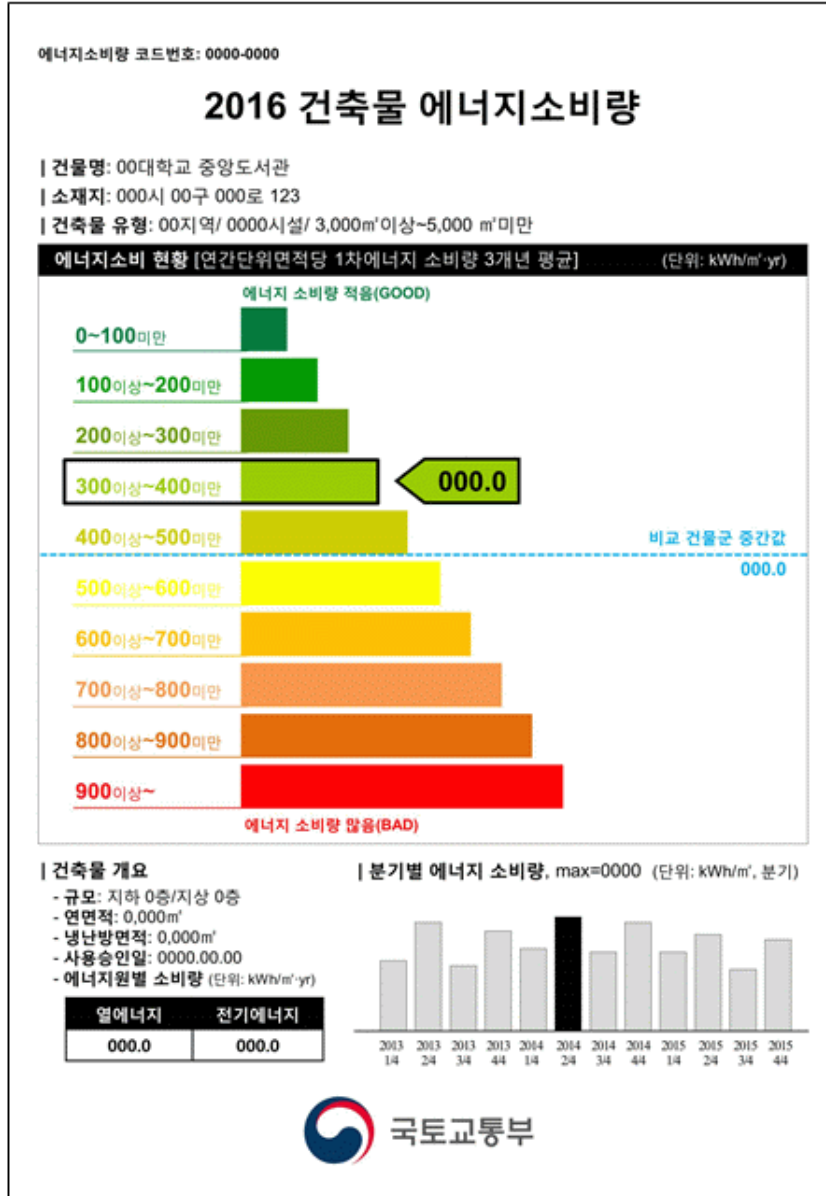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297mm×210mm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

1. 명판의 표시



2. 비교

가. 크기: A3 이상

나. 명판의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공동주택 [] 업무시설

건 축 물 현 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연면적/전용면적	㎡ / ㎡
		주 용 도
건 축 물	인증등급	인증번호
에 너 지 효 율 등 급	인 증 일	인증기관
인 증 내 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에너지사용량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²·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 방			도 시 가 스 (a)		
급 탕			지 역 냉·난방 (b)		
냉 방			열 (a + b)		
조 명			전 기 (c)		
합 계			합 계 (a + b + c)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비율 (%)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최근 4분기 동안 에너지사용량 비율은 ±00%p 변동되었으며, 차상위 등급까지 -00%p 남았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이

운영기관 이

210mm×297mm [보통용지(1종) 120g/㎡]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안내사항

1.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및 활용 제도란?



-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 ▶ 대 상: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인증기관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1차에너지소요량)하여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증
- *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을 표준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에서 필요한 예상 에너지량
- ▶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에너지량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우수**
-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은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표시

□ 에너지사용량등급

- ▶ 에너지사용량: 최근 1년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전기 및 열(가스, 지역난방, 급탕)에너지량
- ▶ 에너지사용량 등급: 5개 등급(A~E)으로 표시,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음**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	구분	세부 내용																															
<p><전기·열에너지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p> 	<p>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사용량 등급(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사용량과 실제에너지사용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 부여 - 비율이 적을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음 - 에너지사용량 등급 기준(에너지사용량 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thead> <tr> <th>등급</th> <th>A</th> <th>B</th> <th>C</th> <th>D</th> <th>E</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td> <td>~70%</td> <td>70~90%</td> <td>90~110%</td> <td>110~130%</td> <td>130%~</td> </tr> <tr> <td>업무시설</td> <td>~55%</td> <td>55~65%</td> <td>65~85%</td> <td>85~115%</td> <td>115~145%</td> </tr> </tbody> </table> ▪ 표준에너지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지역별(시·도) 유사 규모 세대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기준 에너지사용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thead> <tr> <th>구분</th> <th>1구간</th> <th>2구간</th> <th>3구간</th> <th>4구간</th> <th>5구간</th> <th>6구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td> <td><40</td> <td>40~60</td> <td>60~85</td> <td>85~135</td> <td>135~165</td> <td>16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지역별(시·도) 유사 규모 건축물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기준 에너지사용량 	등급	A	B	C	D	E	공동주택	~70%	70~90%	90~110%	110~130%	130%~	업무시설	~55%	55~65%	65~85%	85~115%	115~145%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전용면적(㎡)	<40	40~60	60~85	85~135	135~165	165~
등급	A	B	C	D	E																												
공동주택	~70%	70~90%	90~110%	110~130%	130%~																												
업무시설	~55%	55~65%	65~85%	85~115%	115~145%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전용면적(㎡)	<40	40~60	60~85	85~135	135~165	165~																											
<p><열사용량이 없는 경우></p> 	<p>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원별 사용량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와 열에너지(▲)의 사용량등급을 각각 표시 (열사용량이 없는 경우 전기(▲) 사용량등급만 표시) 																																
	<p>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kWh/㎡·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사용량 표시 																																

- ※ 에너지사용량 등급 및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공급기관 및 건축물대장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며, 건축물 일부가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에너지사용량 등급 및 에너지사용량은 건축물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은 최종에너지사용량, 업무시설은 1차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 1차에너지란 전기, 가스 등의 최종에너지를 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에서의 손실을 포함한 에너지로서, 에너지량에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7. 1. 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명 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 립 연 월 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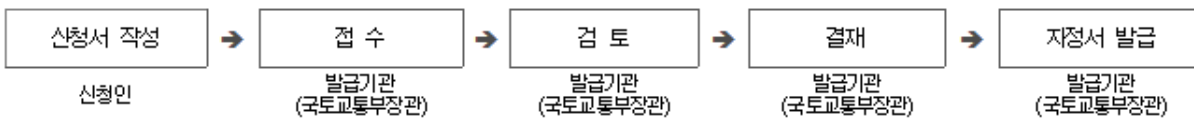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통용지(1종) 120g/㎡]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5.5.29.>

제 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격 취득일 : 년 월 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